

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

-대법원 2007.4.27.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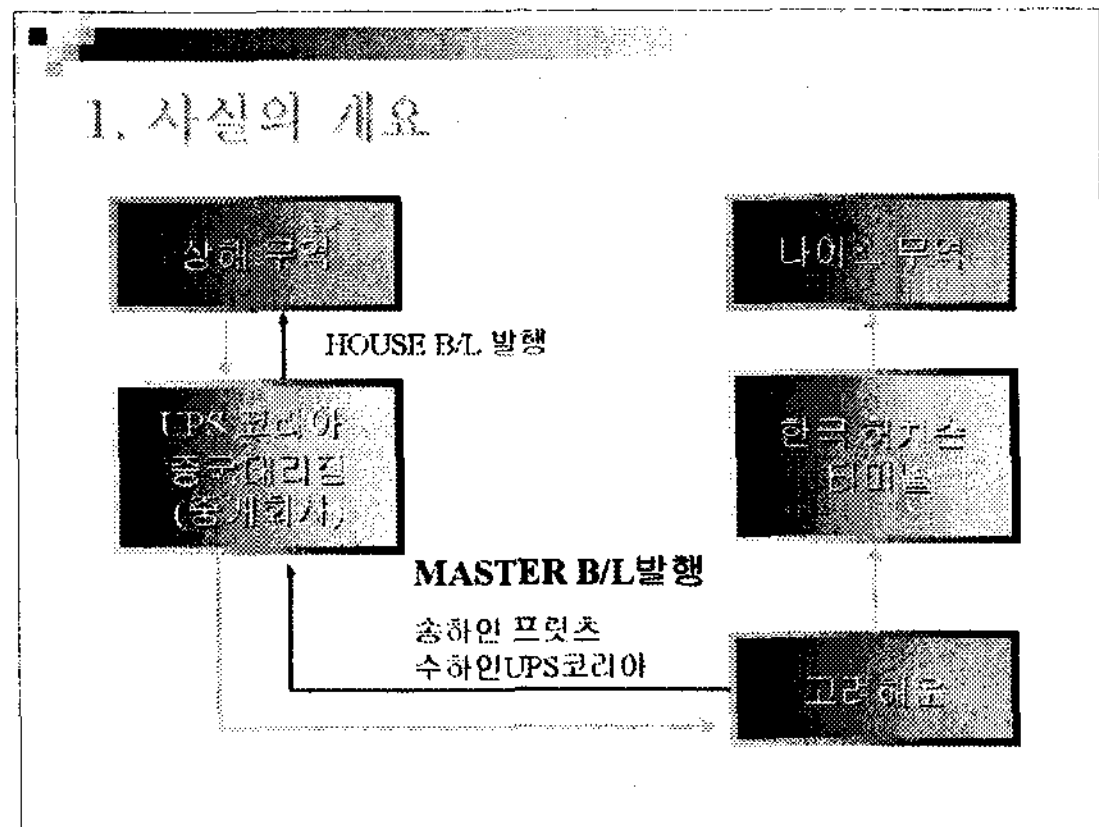
김진권*

*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

요 약 :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,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, 항만터미널운영자,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.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,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.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, '히말라야약관'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.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.

핵심용어 : 히말라야약관, 선하증권, 운송주선인, 항만터미널운영자, 순환보상약관, *Himalaya clause*, *Bill of lading*, *Freight forwarder*, *Terminal operator*, *Circular indemnity clause*

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
-대법원 2007.4.27.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-
2007.12.5.
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
김진권



2.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

- 피고측 주장
 - 고려해운 : 해상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2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
 - 허치슨터미널 : 히말라야약관에 의거하여 포장당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음
- 원고측 주장
 - 허치슨터미널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'운송인의 사용자나 대리인'이 될 수 없으므로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할 수 없음
 - 히말라야약관은 상법 제790조 제1항 "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"에 반하므로 무효임

3. 대법원의 판시내용

- 허치슨터미널의 해상운송인 사용자나 대리인 여부
 - 상법 제789조의3 제2호의 "운송인의 사용자나 대리인" :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=> 항만터미널운영자는 독립계약자이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자나 대리인이 될 수 없음
-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여부
 -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 :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도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음
 - 히말라야약관은 상법 제789조의3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를 위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음

* 대표저자 : 김진권 jinkwon@hhu.ac.kr

4. 히말라야약관의 의의 및 내용

■ 의의

- 영국 보통법상 '직접계약관계의 원칙'(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)에 의해 해상운송인의 권리를 원용할 수 없었던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및 독립계약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면책이익을 원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노력

■ 정의

- 선하증권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면책의 이익이 운송인의 사용자, 대리인, 독립계약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내용을 규정

5.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

■ 영국

- 독립계약자에 대한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: Reid 판사의 대리인 이론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
- The Eurymedon 사건, The New York Star 사건, The Mahkutai 사건 등을 통해 유효성 확인하였으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확대해석 배제
- 1999년 영국 계약법<제3자 권리법> 제정을 통하여 엄격한 직접계약관계의 법리를 완화

■ 캐나다

- 영국의 The Eurymedon 사건 이후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유효성 인정
- London Drugs 사건에서 직접계약관계의 법리를 완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냄

5.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

■ 미국

- 영국의 경향과 유사하게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있음
- 1959년 Herd 사건 이후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엄격하게 해석
-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은 인정하나 제3자에게 이익의 향유를 제공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
 - 계약당사자간 계약관계 : 대상의 특성 범위 내
 - 히말라야약관에 의한 보호범위 명시
 - 히말라야약관에 부여되는 이익 특정
- The Kirby 사건 : 직접계약관계의 원칙 완화
 - 육상의 이행보조자에게까지 효력 인정 확대
 - 제3자에 대한 이익 향유 의사 중시, 운송의 예견성을 근거로 육상 철도회사까지 넓게 해석

6. 히말라야약관 관련 국제조약

■ 헤이그비스비규칙

- 운송인의 사용자와 대리인은 운송계약상의 항변이나 책임제한 원용 가능하나 독립계약자는 제외됨

■ 함부르크규칙

- 하역업자, 터미널운영업자, 하청인,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

■ 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의 책임협약

- 항만하역 사업자 책임의 한도액을 국제물건복합운송 협약과 일치시켜 규정

7. 사건 평석

■ 유효성

-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 히말라야약관과 유사내용 규정
- 선하증권에 사용되는 히말라야약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, 송하인은 이익을 제공하여 주는 채무자가 되고, 운송인은 이익을 요청하는 채권자가 되고, 독립계약자는 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판결임

■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려사항

- 항만터미널운영자가 해상운송인과의 직접계약 체결시 히말라야약관을 삽입하여야 이익 향유
- 항만터미널운영자가 화주와 직접계약시 과실책임주의 적용
- 동일 항만사업계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있으므로 상법상 운송인 책임법과 조화된 항만하역사업자 책임규정 등 검토 필요

감사합니다!